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359

발의연월일: 2024. 11. 7.

발 의 자:김은혜·김기현·최은석

신동욱 • 안상훈 • 고동진

곽규택 • 조배숙 • 조지연

박준태 · 최보윤 · 김상훈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지정하여 관련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에 대하여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.

조선업은 대형선박과 친환경 선박 수출, 군함·잠수함 자체 건조 기술의 유지 및 발전 및 직접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연관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 경제 안보상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산업으로, 특히 우리 조선업은 상당한 기간 전세계 1위의 종합경쟁력 및 선박수주량을 유지한 바 있음.

주요 경쟁국인 중국은 정부의 조선업 집중 투자 정책을 통해 기술 력과 생산능력이 빠르게 향상시켰으며, 최근에는 전세계 선박 건조량 점유율 전세계 1위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종합경쟁력에서도 우리 조선업을 앞질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.

조선업의 경제적 파급효과, 안보상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,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와 첨단 기술적 측면(빅데이터,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 등 첨단 미래형 기술을 접목)에서 동일한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에 대해서도 미래형 자동차와 같이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 ·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,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 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 로 6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조 및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 등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미래형 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"을 "미래형 이동수단, 차세대 조선, 바이오의약품"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제2호가목2)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관한 부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.

②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2025년 1월 1일 이

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10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(연구 ·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) ① -----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(이하 "연구 · 인력개발비"라 한 다)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-----203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. 31일-----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.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연구·인력개발비 중 반도 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 이, 수소, <u>미래형</u> 이동수단, ----- 미래형 이동수단, 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 세대 조선, 바이오의약품----

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 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 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술(이하 "국가전략기술" 이라 한다)을 얻기 위한 연구 개발비(이하 이 조에서 "국가 전략기술연구개발비"라 한다) 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 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. • 나. (생 략)

3. (생략)

② ~ ⑥ (생 략)

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에 투자(중고품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 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 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	
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	
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	
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	
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	
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	
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	
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	
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	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	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	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	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	
3. (현행과 같음)② ~ ⑥ (현행과 같음)	
② ~ ⑥ (현행과 같음)	
ll 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	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
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
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20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.

- 1. (생략)
- 2. 공제금액
 - 가. 기본공제 금액: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(중견기업은 100 분의 5, 중소기업은 100분 의 10)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.
 - 1) (생략)
 - 2)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 이 조에서 "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"이라 한

,
1. (현행과 같음)
2
가
-,
1) (현행과 같음)
2)

다	·)에	2024	년	12월	31	일
<i>까</i>	·지 <u>-</u>	투자ㅎ	누는	경우	-: 1	00
분	의 :	15(중	소기]업은	- 1	00
분	의 2	25)에	상	당하	느	금
액						

나. (생 략)

3. (생략)

② ~ ⑤ (생 략)

<u>2030년 12월 31일</u>
나. (현행과 같음)
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